

2017. 9

적재물배상책임공제 약관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1. 적재물배상책임공제 약관 개정 연혁

구 분	승인일자	승인번호
제 정	2004. 12. 30	물류산업과-2480호
제1차 개정	2005. 3. 23	물류산업과-683호
제2차 개정	2005. 12. 7	물류산업팀-701호
제3차 개정	2009. 3. 25	자동차손해보장팀-675호
제4차 개정	2011. 6. 3	자동차생활과-2360호
제5차 개정	2012. 4. 10	자동차운영과-1106호
제6차 개정	2017. 1. 5	자동차운영보험과-95호
제7차 개정	2017. 9. 14	자동차운영보험과-5044호

2. 계약자께서 아셔야 할 사항

약관은 꼭 한번 이상 읽어보십시오

☞ 이 약관은 계약자 여러분께서 체결한 적재물배상책임공제 계약의 권리 의무와 중요 내용에 관한 규정이므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청약서는 본인이 정확히 작성하여 주십시오

☞ 청약서상의 등록번호, 차종,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연간 매출액 등 기재사항을 정확히 작성하고 반드시 확인하신 후 계약자가 직접 서명, 날인하여 주십시오.

청약서 기재사항의 변동사항은 알려 주십시오

☞ 청약서상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 사실대로 상세히 알려 주십시오. 만약 계약 후 알릴의무 사항에 대하여 알리지 아니하였거나 알리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고 공제금 등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발생 시 다음 사항을 즉시 알려주십시오.

☞ 사고발생의 때,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경우 또는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에는 조합에 곧 알려 주십시오.

적재물배상책임공제약관

화주로부터 수탁 받은 화물을 운송 중 사고로 인해 망그러뜨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로, 구체적인 보상내용 및 적재물배상책임공제 계약의 성립에서 소멸까지의 조합원과 공제조합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은 아래의 적재물배상책임공제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목 차 -

적재물배상책임공제 보통약관

I. 일반조항	-----	1
II. 화물자동차운송위험담보	-----	10
III. 화물자동차운송주선위험담보	-----	15

적재물배상책임공제 특별약관

<input type="checkbox"/> 구간운송 특별약관	-----	21
<input type="checkbox"/> 화물운송부수업무 담보 특별약관	-----	22
<input type="checkbox"/> 수탁화물확장담보 특별약관(Ⅰ)	-----	23
<input type="checkbox"/> 수탁화물확장담보 특별약관(Ⅱ)	-----	24
<input type="checkbox"/> 온도조절장치담보 특별약관	-----	25
<input type="checkbox"/> 안심운송 특별약관	-----	25
<input type="checkbox"/> 분담금 분납 특별약관	-----	27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이용 분담금 납입 특별약관	-----	28
<input type="checkbox"/>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	29
<input type="checkbox"/> 공동인수 특별약관	-----	29
<input type="checkbox"/> 적용환율 특별약관	-----	30

적재물배상책임공제 보통약관

I. 일반조항

제1조(공제계약의 성립) ① 공제계약은 공제계약자의 청약과 공제조합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공제계약은 '계약', 공제계약자는 '계약자', 공제조합은 '조합'이라 합니다)

② 조합은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전액 또는 1회분담금(일정기간단위의 분할분담금)을 받은 경우에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조합이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제증권 또는 공제가입증명서(이하 같습니다)를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은 공제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공제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조합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공제약관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② 조합이 제①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②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조합은 이미 납입한 분담금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분담금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에 금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분담금) ① 분담금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내야 합니다.

② 다른 서면약정이 없으면 공제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분담금을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조합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① 조합의 책임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기간의 첫날 24시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2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공제증권에 이와 다른 시각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시각으로 하며, 시각은 공제증권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② 조합이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분담금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조합은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①항에서 정한 책임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제6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조합원이 조합에 알린 내용이 공제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조합이 증명하는 경우
3. 제8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합이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5조(의무보험과의 관계) 조합은 조합원이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공제(보험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되는 금액(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보험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하는 책임을 집니다. 다만 다른 의무보험에도 동일한 조항이 있을 경우 제16조(공제금의 분담)을 따릅니다.

제6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조합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7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에 공제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조합원은 지체없이 서면으로 조합에 알리고 공제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공제계약(보험계약을 포함합니다.)을 맺으려고 하든지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조합은 제①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분담금을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내에 분담금의 증액을 청구하

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받을 분담금에 대하여는 제3조(분담금)의 제②항에 따릅니다.

③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조합이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8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운수사업법’이라 합니다)에 정한 의무보험 가입대상 화물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아래 ②에 따릅니다.

1. 허가사항이 변경(감차에 한합니다)된 경우
2.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한 경우
3. 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감차명령을 받은 경우
4. 적재물배상책임공제 또는 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적재물배상책임 공제 또는 보험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5. 조합이 파산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6. 기타 법령상 의무가입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운수사업법에 정한 의무보험 가입대상 화물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 계약자는 손해가 생기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공제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조합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수사업법에 정한 의무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제3호 내지 제4호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조합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6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다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 의무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조합이 책임을 집니다.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7조(계약후 알릴 의무)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상당한 이유없이 제20조(조사)의 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한 때
4. 계약자 또는 조합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때

④ 제③항의 1.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조합이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조합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조합이 계약자 또는 조합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⑤ 제③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조합은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③항의 1. 및 2.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증명된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9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조합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공제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에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계약의 무효) 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 ① 계약자, 조합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 ② 계약자, 조합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공제 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사기의 목적으로 조합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 ③ 계약을 맺은 후에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계약을 다른 공제사업자 또는 보험회사와 맺고서 이를 사기의 목적으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11조(분담금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분담금을 돌려 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조합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분담금
2. 계약자 또는 조합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분담금을 뺀 잔액. 다만, 계약자, 조합원 또는 이들

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무효된 때에는 분담금을 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3.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조합이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분담금을 환급하지 않습니다.

② 계약자가 노사분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등으로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휴업하여 공제증권에 기재된 화물자동차(이하 '계약자동차'라 합니다)의 운행을 중지한 때에는 아래와 같이 분담금을 돌려 드립니다.

1. 휴업으로 인한 운행중지기간(이하 '운휴기간'이라 합니다)이 30일을 초과한 경우에 한해 운휴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분담금을 돌려드립니다.

2. 운휴기간은 관계관청에 휴업신고가 된 날로부터 관계관청에 휴업종료시 신고된 날의 전날까지로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관계관청에 휴업종료신고가 있기 전에 조합에 운행재개의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접수하기 전날까지로 합니다.

3. 운휴기간이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관계관청에 휴업신고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운휴기간의 개시일자와 계약자동차의 명세를 조합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관계관청에 휴업종료신고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조합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4. 운휴기간중에 발생한 계약자동차의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운휴기간중에 운행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조합에 통지한 명세상의 모든 계약자동차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계약자 또는 조합원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경우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조합원이 제①항의 1. 및 2.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조합은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제①항의 3.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조합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3조(손해방지 의무) ①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조합원은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조합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수탁화물에 대한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조합원이 소송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조합에 통지하여야 하고, 조합원이 소송을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조합의 승인을 받을 일

② 계약자 또는 조합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①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에 따라 결정합니다.

1. 제①항의 1. 및 2.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2. 제①항의 3.의 경우에는 조합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①항의 4.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조합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제14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합의 해결) ① 조합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내에서 조합에 대하여 공제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조합원이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조합이 제①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조합원은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조합원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원을 대신하여 조합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조합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조합원은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조합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②항, 제③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합은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공제금의 지급) ① 조합원이 공제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공제금 청구서
2. 공제증권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조합이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② 조합은 제①항에 따른 공제금 청구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공제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공제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공제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이 기간 내에 마칠 수 없고 조합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조합이 추정한 공제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조합은 제②항의 지급공제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된 날로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조합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조합은 조합원이 제①항의 서류 중 기재사항에 관하여 허위로 기재하거나 어떠한 사실을 숨겼을 경우에는 일체의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조합이 손해보험사와 별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합원은 사고발생의 통지, 보험금의 청구를 손해보험사에 직접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보험사는 사고의 처리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조합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게 됩니다.

제16조(공제금의 분담) ①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보험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조합은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② 의무보험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는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조합원이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①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조합원이 다른 계약에 대하여 공제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조합의 제①항에 의한 지급공제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17조(소멸시효) 공제금청구권, 분담금 또는 환급금반환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18조(대위권) ① 조합이 공제금을 지급한 때에는 조합은 지급한 공제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조합이 보상한 금액이 조합원이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조합원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조합원이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 ② 계약자 또는 조합원은 제①항에 의하여 조합이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조합이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조합은 제①항,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19조(잔존물) 조합이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조합의 소유가 됩니다.

제20조(조사) ① 조합은 공제기간중 언제든지 조합원의 시설과 업무 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조합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조합은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내에서는 공제기간중 또는 공제기간 종료 후 3년이내에는 언제든지 조합원의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21조(계약내용의 교환) 조합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공제조합,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조합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시, 공제종목, 분담금, 공제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공제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제22조(분쟁의 조정) 이 계약의 내용 또는 공제금의 지급등에 관하여 조합과 계약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3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조합의 본부, 지부 또는 출장소 소재지 중 계약자, 조합원 또는 수익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4조(약관의 해석) ① 조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조함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25조(조함이 제작한 공제안내장등의 효력) 조함이 공제모집과정에서 제작·사용한 공제안내장(서류·사진·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 포함)의 내용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26조(조함의 손해배상책임) 조함은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규 및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27조(추가분담금의 납부) 공제규정 제28조(결손금의 처리)의 제①항에 의하여 추가분담금의 납입 통보를 받은 계약자는 납입 기일 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28조(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II. 화물자동차운송위험담보

제29조(가입대상) 이 제2장 (화물자동차운송위험담보)의 가입대상은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에 한합니다.

제30조(보상하는 손해) 조합은 조합원이 공제증권상의 대한민국 내에서 공제기간 중에 운송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화물(이하 '수탁화물'이라 합니다)을 공제증권에 기재된 화물자동차로 운송하는 기간(이하 '운송기간'이라 합니다) 동안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수탁화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수탁화물 가액내에서 조합원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2. 조합원이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잔존물의 수송비용, 피해복구비용 및 제13조(손해방지의무) 제①항의 1.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조합원이 제13조(손해방지의무) 제①항의 1.의 방법을 강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비용 중 수탁화물에 대한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조합의 동의를 받은 비용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나. 조합원이 제13조(손해방지의무) 제①항의 2.의 절차를 취하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조합원이 조합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공제증권상 보상한도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조합원이 제14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합의 해결) 제②항, 제③항의 조합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제31조(제외 수탁화물) ① 아래와 같이 경제적 가치산정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화물이나 특정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화물은 이 계약에 있어서의 수탁화물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원고, 설계서, 모형, 증서, 서류, 사진, 편지 및 이와 비슷한 화물, 미술품이나 골동품

2. 귀금속류, 화폐, 어음, 수표, 채권, 유가증권류, 인지
3. 시계, 담배, 모피류
4. 유리제품
5. 계란류
6. 살아있는 동물

② 조합은 제①항의 화물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화물을 고지하고 해당 특별약관을 첨부한 경우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조합은 조합원이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조합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조합원과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제5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9. 수탁화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땀,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조합원의 대리인이나 근로자 또는 그의 가족, 친족이 행하거나 가담한 도난이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수탁화물의 덮개(차량에 부착된 덮개를 포함합니다)를 씌우지 아니함으로써

- 생긴 손해, 수탁화물에 덮개를 씌웠을 때 그 덮개로 생긴 손해, 덮개를 씌웠으나 덮개가 불완전하거나 덮개 씌우는 것이 불완전하여 생긴 손해 등
12. 화물의 포장불완전으로 생긴 손해, 수탁화물을 결박하지 않았거나 고정하지 않았으므로 생긴 손해 등
 13. 원인 불문하고 수탁화물간 충돌, 접촉 또는 수탁화물과 화물칸 간의 충돌, 접촉으로 생긴 손해. 다만, 그 손해가 담보차량의 충돌로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14. 트레일러 차량이 컨테이너를 고정시키는 잠금장치를 하나라도 채우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손해
 15.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또는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 제한 등)의 적재중량이나 적재용량 기준을 초과하여 적재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적재중량에 대한 적재중량 또는 실제 적재용량에 대한 적재용량의 비율로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 가.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에 의해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거나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에 의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그 허가받은 내용과 범위 내에서 운행한 때.
 - 나. 조합원이 사고의 원인이 초과적재가 아님을 입증한 때.
 16. 담보차량의 충돌이 수반되지 아니한 경우 온도조절장치(냉동·냉장·보온·항온·항습 등)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수탁화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수탁화물의 징발, 몰수, 압류, 파괴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분실,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기계류, 전자기기류 또는 이와 유사한 재물의 해체 또는 설치 중에 생긴 손해
 20. 수탁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후 14일을 초과하여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날짜 인식 오류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손해
 - 가. 조합원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나. 조합은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다. 조합은 위 '가'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라. 위 '가, 나, 다'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33조(공제금등의 지급한도) ① 조합이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인도할 날의 도착지에서의 수탁화물의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수탁화물이 보세화물인 경우에는 수출화물에 대하여는 송품장에 기재된 본선인도가격을, 수입화물에 대하여는 수입면장(수입면장이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에 기재된 운임, 보험료 포함가격을 한도로 합니다.

② 조합은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공제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공제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조합은 제②항의 손해배상금과 제30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나목 내지 라목의 비용전액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금액이 공제증권상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30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의 비용중 소송비용의 인지대, 변호사 비용 및 라.의 비용은 공제증권상의 보상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조합은 제30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의 비용에 관하여 15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제34조(화물자동차의 양도) ① 계약자 또는 조합원이 공제기간중 계약자동차를 양도(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산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빌린 사람을 계약자 또는 조합원으로 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계약자동차를 반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한 때에는 이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계약자

및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판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빌려준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게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합니다)가 이 계약에 의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계약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뜻을 서면으로써 조합에 통지하여 공제증권에 승인의 배서를 청구하고 조합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계약을 적용하며, 조합이 서면으로 통지받은 때로부터 승인여부를 양수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1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량양도시 분담금의 증가가 있는 경우 해당분담금의 납부가 이루어진 후부터 양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조합은 계약자동차가 양도된 후(전항 단서의 승인이 있는 후는 제외함)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5조(화물자동차의 대체) ① 계약자 또는 조합원이 공제기간중 계약자동차의 폐차 또는 양도 등으로 다른 화물자동차를 새로 취득하여 대체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합에 알리고 공제증권에 조합의 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대체된 화물자동차에 이 계약이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량대체로 인한 분담금의 증가가 있는 경우 해당분담금의 납부가 이루어진 후부터 승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제①항의 경우 계약자동차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날로부터 조합이 새로운 화물자동차의 대체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의 분담금을 일할계산하여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III. 화물자동차운송주선위험담보

제36조(가입대상) 이 제3장 (화물자동차운송주선위험담보)에서 가입대상은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에 한합니다.

제37조(보상하는 손해) 조합은 조합원이 대한민국 내에서 공제기간 중에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수탁화물에 대하여 화주로부터 수탁받은 시점으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운송과정(차량운송 및 화물운송부수업무)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수탁화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수탁화물 가액내에서 조합원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2. 조합원이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조합원이 잔존물의 수송비용, 피해복구비용 및 제13조(손해방지의무) 제①항의 1.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조합원이 제13조(손해방지의무) 제①항의 1.의 방법을 강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조합의 승인을 받은 비용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나. 조합원이 제13조(손해방지의무) 제①항의 2.의 절차를 취하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조합원이 조합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공제증권상 보상한도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조합원이 제14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합의 해결) 제②항, 제③항의 조합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제38조(제외 수탁화물) ① 아래와 같이 경제적 가치산정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화물이나 특정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화물은 이 계약에 있어서의 수탁화물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원고, 설계서, 모형, 증서, 서류, 사진, 편지 및 이와 비슷한 화물, 미술품이나 골동품

2. 귀금속류, 화폐, 어음, 수표, 채권, 유가증권류, 인지
3. 시계, 담배, 모피류
4. 유리제품
5. 계란류
6. 살아있는 동물

② 조합은 제①항의 화물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화물을 고지하고 해당 특별약관을 첨부한 경우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9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조합은 조합원이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및 조합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조합원과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제5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9. 수탁화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땀,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조합원의 대리인이나 근로자 또는 그의 가족, 친족이 행하거나 가담한 도난이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수탁화물의 덮개(차량에 부착된 덮개를 포함합니다)를 씌우지 아니함으로써

- 생긴 손해, 수탁화물에 덮개를 씌웠을 때 그 덮개로 생긴 손해, 덮개를 씌웠으나 덮개가 불완전하거나 덮개 씌우는 것이 불완전하여 생긴 손해 등
12. 화물의 포장불완전으로 생긴 손해, 수탁화물을 결박하지 않았거나 고정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손해 등
 13. 원인 불문하고 수탁화물간 충돌, 접촉 또는 수탁화물과 화물칸 간의 충돌, 접촉으로 생긴 손해. 다만, 그 손해가 담보차량의 충돌로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14. 트레일러 차량이 컨테이너를 고정시키는 잠금장치를 하나라도 채우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손해
 15.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또는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 제한 등)의 적재중량이나 적재용량 기준을 초과하여 적재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적재중량에 대한 적재중량 또는 실제 적재용량에 대한 적재용량의 비율로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 가.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에 의해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거나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에 의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그 허가받은 내용과 범위 내에서 운행한 때.
 - 나. 조합원이 사고의 원인이 초과적재가 아님을 입증한 때.
 16. 담보차량의 충돌이 수반되지 아니한 경우 온도조절장치(냉동·냉장·보온·항온·항습 등)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수탁화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수탁화물의 징발, 몰수, 압류, 파괴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분실,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기계류, 전자기기류 또는 이와 유사한 재물의 해체 또는 설치 중에 생긴 손해
 20. 수탁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후 14일을 초과하여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날짜 인식 오류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손해
 - 가. 조합원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나. 조합은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

(EDPS) 또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 조합은 위 '가'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라. 위 '가, 나, 다'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22. 이사화물과 관련한 배상책임

23. 조합원이 자기소유의 화물자동차로 차량운송중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조합원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창고(모든 보관시설을 포함합니다)에 보관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40조(공제금등의 지급한도) ① 조합이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내에서 인도할 날의 도착지에서서의 수탁화물의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수탁화물이 보세화물인 경우에는 수출화물에 대하여는 송품장에 기재된 본선인도가격을, 수입화물에 대하여는 수입면장(수입면장이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에 기재된 운임, 보험료 포함가격을 한도로 합니다.

② 조합은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공제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공제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합니다.

③ 조합은 제②항의 손해배상금과 제37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나목 내지 라목의 비용전액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금액이 공제증권상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37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의 다목의 비용중 소송비용의 인지대, 변호사 비용 및 4.의 비용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만 보상합니다.

④ 조합은 제37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의 비용에 관하여 15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제41조(양도) 이 공제의 목적의 양도는 조합의 서면동의 없이는 조합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조합이 서면 동의를 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의 재산관리인을 그 의무범위 내에서 조합원으로 합니다.

다만, 운수사업법상의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조합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공제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공제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용 어 의 정 의	
조합원	<p>조합원이라 함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제증권에 조합원으로 기재된 자 2. 화물운송업무 또는 운송주선업무 범위내에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조합원의 지시, 감독에 따라 상시적 또는 일시적으로 조합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 나. 조합원과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동업자 및 그의 직계존비속 다. 조합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지는 자 라. 조합원의 법정대리인, 재산관리인, 파산관재인
운송기간	<p>운송기간이라 함은 발송지에서 수탁화물의 상차, 도착지의 하차작업을 포함한 수탁화물을 운송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반입, 반출 환적 및 기계를 이용한 상·하차는 운송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p>
상 차	<p>상차라 함은 수탁화물을 지상으로부터 차량으로 적재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러나 수탁화물이 놓여진 원래의 장소로부터, 차량이 있는 장소로 운반하는 반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p>
하 차	<p>하차라 함은 운송된 수탁화물을 차량으로부터 지상으로 하역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러나 수탁화물을 양도, 보관, 설치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반입은 포함하지 않습니다.</p>
반 입	<p>반입이라 함은 운송된 수탁화물을 양도, 보관, 설치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러나 수탁화물을 차량으로부터 내리는 하차는 포함하지 않습니다.</p>
반 출	<p>반출이라 함은 수탁화물을 놓여진 원래의 장소로부터, 차량이 있는 장소로의 운반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러나 수탁화물을 지상으로부터 차량으로 적재하는 상차는 포함하지 않습니다.</p>
환 적	<p>수탁화물을 도착지에 도착되기 전에 당초에 적재되었던 차량에서 다른 차량으로 이전 및 재적재하는 작업을 말합니다.</p>

사 고	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수탁화물의 손해를 말합니다.
1회의 사고	1회의 사고라 함은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써 조합원이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봅니다.
화물운송 부수업무	화물운송부수업무라 함은 수탁화물의 반입, 반출, 환적 및 기계를 이용한 상·하차등 통상의 운송과정중에 발생하는 차량운송과 관련된 부수업무를 말합니다. 단, 보관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해물질	공해물질이라 함은 연기, 증기, 매연, 연무, 산, 알카리, 화학물질 및 폐기물(재생, 수리 또는 재활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을 포함한 고체, 액체, 기체상태의 열성자극물이나 오염물질을 말합니다.
유리제품	유리제품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제품을 말합니다. ① 유리, 도자기 또는 사기로 만들어진 제품 ② 유리, 도자기 또는 사기로 만들어진 용기와 그 수용물 ③ 유리, 도자기 또는 사기로 만들어진 부품 및 그 부품이 제품 원가의 50%를 초과하는 완제품
법률상의 배상책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배상금을 말합니다. 단, 세금·벌금·과태료·과징금·징벌적 손해배상금·배액배상금·특별손해액(가치하락, 시장상실 등에 의한 손해액을 말합니다) 및 조합원과 타인과의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을 경우에 그 약정에 따라서 가중된 손해배상금(계약상의 가중책임)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도난 및 분실	도난이라 함은 조합원에 의해 명백히 제3자의 침입이 입증된 경우로서 도난신고가 경찰서에 접수된 경우이며 그 이외의 물건의 망실(忘失)은 분실(紛失)로 간주합니다.
테 러	테러라 함은 정부, 일반대중, 일부집단 등에 의하여 영향을 미치거나 공포를 조성할 의도를 포함하여 정치, 종교, 특정이념, 기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단독으로 또는 조직이나 정부를 대신하거나 연계하여 행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무력 또는 폭력의 사용, 위협 등을 말합니다.

적재물배상책임공제 특별약관

구간운송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운송사업자는 보통약관 제2장(화물자동차운송위험담보)과 별도로 이 특별약관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수사업법 제35조(적재물배상책임 의무 가입)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대상자는 보통약관 제2장(화물자동차운송위험담보)을 가입하여야만 이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조합은 보통약관 제30조(보상하는 손해) 및 제3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화물을 아래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운송하는 동안 보통약관 제30조(보상하는 손해)에 기재된 사고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3조(책임의 시기와 종기) ① 조합의 책임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기간중 조합원이 운송의 목적으로 수탁화물을 아래에 기재된 발송장소에서 위탁자로부터 인수(반출 및 적재위험을 포함합니다) 받은 때부터 시작합니다.

② 조합의 책임은 공제기간중이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끝납니다.

1. 아래에 기재된 도착장소에서 수탁화물을 인도하거나 보관장소에 반입(하역위험을 포함합니다)하였을 때(인도와 반입중 먼저 도래한 시점에 조합의 책임은 끝납니다)
2. 수탁화물이 위 1.의 도착장소에서 인도되거나 보관장소에 반입되기전이라도 도착장소에 도착된 후 24시간을 경과하였을 때

제4조(보상의 특칙) 조합은 보통약관 제33조(공제금등의 지급한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공제금을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① 공제증권상의 보상한도액이 수탁화물의 가액과 같을 때 : 손해액 전액
- ② 공제증권상의 보상한도액이 수탁화물의 가액보다 많을 때 : 수탁화물의 가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 ③ 공제증권상의 보상한도액이 수탁화물의 가액보다 적을 때

$$\text{손해액} \times \frac{\text{공제증권상의 보상한도액}}{\text{수탁화물의 가액}}$$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31조(제외 수탁화물)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 운송차량:					
등록번호:		톤수:		소유자:	
2. 수탁화물:					
화 물 명	가 액	수 량	소 유 자	위 탁 자	수 탁 자
3.운송일자(기간):					
부터		까지(일간)	
4.운송구간:					
발송장소:					
도착장소:					
운행도로:					

화물운송부수업무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조합은 적재물배상책임공제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0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공제기간 중에 대한민국내에서 운송의 목적으로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수탁받아 도착지에서 수하인에게 수탁화물을 인도하기까지, 화물운송에 관한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사고로 발생한 수탁화물의 재산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조합은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수탁화물확장담보 특별약관(1)

제1조(보상하는 손해) 조합은 적재물배상책임공제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1조(제외 수탁화물) 및 제38조(제외 수탁화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수탁화물을 조합원이 공제기간중 운송하는 동안 보통약관 제30조(보상하는 손해) 및 제37조(보상하는 손해)에 기재된 사고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2조(확장 수탁화물의 범위)

조합이 확장하여 보상하는 수탁화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시계, 담배, 모피류
- ② 유리제품
- ③ 계란류
- ④ 살아있는 동물

제3조(동물에 대한 보상의 특칙)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의하는 살아있는 동물이라 함은 어류 및 가축을 말하며, 가축이라 함은 축산법 제2조(정의)의 가축을 말합니다.

<축산법 제2조(정의)의 가축>

- 소, 말, 산양, 면양, 돼지, 닭, 노새, 당나귀, 토끼, 개,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꿀벌
-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② 이 특별약관에서 동물의 손해는 폐사에 한하여 보상하며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수탁화물명	
평균운송 횟수	회/월
평균운송 가액	만원

수탁화물확장담보 특별약관(II)

제1조(보상하는 손해) 조합은 적재물배상책임공제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1조(제외 수탁화물) 및 제38조(제외 수탁화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수탁화물을 조합원이 공제기간중 운송하는 동안 보통약관 제30조(보상하는 손해) 및 제37조(보상하는 손해)에 기재된 사고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2조(확장수탁화물의 범위)

조합이 확장하여 보상하는 수탁화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원고, 설계서, 모형, 증서, 서류, 사진, 편지 및 이와 비슷한 화물, 미술품이나 골동품
- ② 귀금속류, 화폐, 어음, 수표, 채권, 유가증권류, 인지

제3조(보상의 특칙)

- ① 제2조(확장수탁화물의 범위) 제①항의 화물을 공제의 목적으로 한 계약의 경우 조합은 계약자 또는 조합원과 공제의 목적의 가액을 협의하여 평가하고 그 금액을 공제기간 중의 공제가액으로 합니다.
- ② 제2조(확장수탁화물의 범위) 제②항의 화물을 공제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계약자 또는 조합원은 적당한 장부를 비치하고, 그 품명, 품질, 수량, 가액, 보관장소 및 매일의 재고 상황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 ③ 위 제②항에 대하여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은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④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 제②항의 기재사항중 불분명한 기록이 있는 경우, 조합은 해당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거래처의 장부등 기록 또는 그 밖의 정확한 증거가 있을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수탁화물명	
평균운송 횟수	회/월
평균운송가액	만원

온도조절장치담보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조합은 보통약관 제3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6. 및 제39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6.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온도조절장치(냉동·냉장·보온·항온·항습 등)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수탁화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안심운송 특별약관

제1장 비례보상사고 확장담보

제1조(보상하는 손해) 조합원이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거나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내용과 범위 내에서 운행한 경우에는, 조합은 보통약관 제3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5호 및 제39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또는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 제한 등)의 적재중량이나 적재용량 기준을 초과하여 적재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 특약에 가입된 경우라도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에 의한 경찰서장의 허가 또는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에 의한 관리청의 허가의 내용과 범위를 벗어나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사고의 원인이 초과적재가 아님을 입증한 때는 실제 적재중량에 대한 적재중량 또는 실제 적재용량에 대한 적재용량의 비율로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2장 포장불완전사고 확장담보

제3조(보상하는 손해) 조합은 보통약관 제3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1호 내지 제13호 및 제39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화물의 덮개로 인한 손해, 화물의 포장 또는 결박 불완전으로 생긴 손해 및 수탁화물간 충돌, 접촉으로 생긴 손해 등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 특약에 가입한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비나 눈 또는 이와 비슷한 기상조건 하에서 덮개를 씌우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손해
2. 기타 사고발생의 개연성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을 정도로 수탁화물의 포장 또는 적재(결박)의 방법이 현저하게 잘못됨으로써 생긴 손해

제3장 피해물 수습비용 확장담보

제5조(보상하는 손해) ① 조합은 보통약관 제33조(공제금등의 지급한도) 제④항 및 보통약관 제40조(공제금등의 지급한도) 제④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지출한 잔존물의 수송비용, 피해복구비용 및 보통약관 제13조(손해방지의무)제①항의 1.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①항에 따라 조합에서 보상하는 금액은 아래 사유로 인해 조합원이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하되 최대 3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1. 피해물 수습을 위한 지게차 또는 크레인 등의 장비 대여비용
2. 피해물의 손해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차량 대여 등 수송비용
3. 피해물 상하차, 분류 등을 위한 인건비 비용(단, 통계법상 지정된 통계업체가 발표한 공사부문의 일용근로자 임금단가를 기준함)
4. 기타 조합원이 조합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피해물 수습비용

제4장 기타 사항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분담금 분납 특별약관

제1조(분담금의 분납) 계약자가 적용분담금을 공제계약청약서에 기재된 회수 및 금액(이하 “분할분담금”이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2조(분할분담금의 납입)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시 제1회 분할분담금을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분담금은 약정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공제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제①항의 제1회 분할분담금을 납입하기 전에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미납입분담금의 납부)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분할분담금이 미납된 경우에는 조합에서 계약자 또는 조합원에게 지급될 금액이 있을 경우 미 납입된 분담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제4조(계약의 효력상실) ① 계약자가 제2조(분할분담금의 납입)에서 정한 납입기일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분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입기일로부터 14일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조합은 납입최고기간 중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①항의 납입최고기간 내에 분할분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부터 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③ 분할분담금 납입지체로 계약의 효력상실이 예상되는 경우, 조합은 계약자 또는 조합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제①항, 제②항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서면으로 안내할 경우 계약자 또는 조합원이 보통약관 제7조(계약후 알릴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공제증권에 기재된 계약자 또는 조합원의 주소를 조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④ 조합이 제③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조합원이 당해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조합은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①항의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제①항 및 제②항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통보하여 드립니다.

제5조(계약의 부활) ① 계약의 효력상실 후 30일 안에 계약자가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미 납입된 분담금을 납입한 때에는 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② 제①항의 경우 계약이 효력 상실된 때로부터 미납입분담금을 영수한 날의 24시까지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신용카드 이용 분담금 납입 특별약관

제1조 (적용대상) 공제조합(이하‘조합’이라 함)과 업무협약이 체결된 신용카드회사(이하‘카드회사’라 함)의 카드회원 중 조합원 및 동의된 위·수탁 차주^(*)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분담금을 납입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 ‘동의된 위·수탁 차주’라 함은 조합원으로부터 본인 명의의 개인 신용카드(유류구매카드)로도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동의(웹, 모바일, 서면, 전화 등 유효한 의사 확인이 가능한 방식을 포함합니다) 받은 자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 제1항에 의한 위·수탁계약상의 위·수탁 차주를 말합니다.

제2조 (공제계약 당사자) 이 특별약관에서 위·수탁 차주는 자기 명의의 카드로 분담금을 납입한 경우라도 공제계약의 당사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도 공제계약의 당사자는 조합원이 됩니다.

제3조 (사용카드의 범위) 제1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원(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 명의의 카드
2. 동의된 위·수탁 차주의 개인 신용카드(유류구매카드^(*1))

(*1) ‘유류구매카드’라 함은 국토교통부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유가보조금 거래내역의 투명화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카드협약사가 발행한 카드를 말합니다.

제4조 (분담금의 영수) 조합은 조합원이 이 약관에서 정한 카드로 분담금을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분담금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제5조 (사고카드 계약) ① 사고카드로 분담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조합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② 위‘①’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 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대위권포기 특별약관(화물자동차운송위험 담보용)

조합은 적재물배상책임공제 보통약관 제18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공동인수 특별약관

이 공제증권은 아래의 회사들을 대리하여 우리회사가 발행하며 각 회사는 아래에 명기된 인수비율에 따라 타 보험자의 책임과는 관계없이 개별적, 독립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합니다. 또한 공동보험자의 도산 등의 지급불능사유 발생 시에도 각 회사는 자사가 인수한 지분만을 보상합니다.

보험회사명

인수비율

적용환율 특별약관

제1조 조합은 분담금을 원화로 영수 또는 환급할 때에는 청약일 또는 배서일의 한국외환은행 1차 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합니다.

- ① 분담금 : 청약일
- ② 추가 및 환급분담금 : 배서일
- ③ 해지환급분담금 : 해지일
- ④ 분납분담금 : 납입해당일

제2조 공제금은 지급일의 한국외환은행 1차 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 또는 ()화에 해당하는 외환증서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www.truck.or.kr

※ 적재물배상 책임공제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가까운 곳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부 ■

- 총 무 부 : 02)3483-3700
- 기 획 부 : 02)3483-3730
- 보상지도부 : 02)3483-3760
- 전 산 정 보 실 : 02)3483-3800
- 감 사 실 : 02)3483-3780

- | | | | |
|------|--------------|-----------|--------------|
| ▶ 서울 | 02)3433-8000 | ▷ 온산 | 052)257-2571 |
| ▶ 부산 | 051)464-3901 | ▷ 용인(사) | 031)334-8855 |
| ▶ 대구 | 053)585-2300 | ▷ 의정부(사) | 031)847-7771 |
| ▶ 인천 | 032)890-9000 | ▷ 평택(사) | 031)656-5544 |
| ▶ 대전 | 042)867-3888 | ▷ 강릉 | 033)652-7100 |
| ▶ 울산 | 052)257-9400 | ▷ 원주 | 033)744-5844 |
| ▶ 경기 | 031)242-3355 | ▷ 충주(사) | 043)856-3366 |
| | | ▷ 천안(사) | 041)567-8081 |
| ▶ 강원 | 033)253-3777 | ▷ 세종 | 044)862-7311 |
| | | ▷ 군산(사) | 063)453-5131 |
| ▶ 충북 | 043)220-0100 | ▷ 정읍 | 063)535-1844 |
| ▶ 충남 | 041)630-2660 | ▷ 목포(사) | 061)242-6784 |
| | | ▷ 순천(사) | 061)723-7184 |
| ▶ 전북 | 063)250-3355 | ▷ 포항(사) | 054)282-3355 |
| | | ▷ 안동구미(사) | 054)456-3317 |
| ▶ 전남 | 062)526-3355 | ▷ 광주(사) | 062)268-3355 |
| | | ▷ 부산(사) | 051)507-9041 |
| ▶ 경북 | 053)751-9171 | ▷ 진주(사) | 055)752-2511 |
| | | | |
| ▶ 경남 | 055)239-6000 | | |
| | | | |
| ▶ 제주 | 064)753-8310 | | |
| ▶ 직할 | 02)774-9634 | | |